

「학생장학위원회 규정」 개정문

개정 2024. 9. 30. · 시행 2024. 9. 1.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학생장학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처장, 총장특보, 재무처장"을 "처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